

- 본 청원은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일대가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사면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존치가치가 없고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
-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의 심사를 위해 현장확인과 관련자료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
- 청원지역 주변에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·연립 및 저층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롯데

- 아파트(16층), 한일아파트(16층), 아남아파트(13층) 등 고층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어 동 청원지역은 사방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단독주택의 시계불량, 일조권저해, 사생활침해 등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재산권 하락, 위화감 조성, 주변 일반주거지역과의 형평성 시비 발생 등 주변환경여건으로 보아 전용주거지역의 해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
-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토록 촉구하는 것임.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31		접수년월일	2000. 1. 21
청 원 인	주 소	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 22호		
	성 명	이재식 외 66인	주민등록번호	
소개의원	이철호 의원(한나라당, 서초 제4선거구, 행정자치위원회)			
건 명	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3번지내의 용도지역변경요구에 관한 청원			
소관위원회	도 시 관 리 위 원 회			

요 지

- 청원인 등이 거주하는 서초동 1643번지 일대 60필지는 사면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동남쪽의 지상 14층 기존아파트 건물과 북쪽으로 17층의 대형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으나
- 본 지역만이 유독 분지형태의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'99년 12월 서초구청장에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, 본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서울시의 회신(용도지역 변경결정요청 반려통지)이 있었음을 통보받은 바 있음.
- 그러나 본 지역만을 전용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치시키기에는 헌법상 명시된 모든 주민의 재산권 보장 규정과 인접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타당성이 없으니,
- 청원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지 않도록 본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임.